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69
----------	------

2024년 11월 2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5일,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32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영실 의원]

가. 제안이유

- 한강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다양한 생물종의 보금자리이자 도시 생태계의 핵심 축임. 그러나 최근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조례의 목적에 생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대, 이용환경 개선 등을 추가함
(안 제1조).
- 2) '생물다양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3호).
- 3) 한강공원 생태 보전 시책의 장·단기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4호).
- 4) 시장의 책무로 한강의 환경 훼손 최소화 및 홍보·참여 활성화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5) 시민의 책무에 한강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시책에 대한
적극적 협력 의무를 추가함(안 제6조제2항).
- 6) 한강 시책 추진에 따른 생태환경·기능·생물다양성 변화 등 시책 집행의
효과와 실적 현황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 7) 한강 이용현황 및 프로그램·행사 참여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0조제2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의 이용 환경 개선 목적의 개발 행위와 생태적 가치 유지 목적의 보전 행위 간 균형 유도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미흡했던 한강 생태계 보전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나. 세부 검토 의견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중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을 ‘한강의 생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대’로, ‘시민의 이용’을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개선’으로 보충해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다만, 관련 법령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자연환경보전법」 등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하여 생태환경 ‘개선’이 아닌 ‘보전’이 더 적절할 것임.

- 안 제3조는 안 제1조에 포함된 ‘생물다양성’의 정의를 관련 법령¹⁾에 따라 현행화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 안 제4조는 생태적 보전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집행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업의 장·단기적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태 보전 시책의 실효성 확보에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한강의 환경 훼손 최소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²⁾와 시민참여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활성화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강의 생태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안 제6조는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책에 협력³⁾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며, 이는 시장의 책무에 상응하는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 안 제10조는 한강공원 백서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시책 집행 효과, 실적, 시민참여 관련 현황 등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별첨]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의 내용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책 집행에 따른 장·단기적인 효과와 시민참여로 인한 영향 등까지 공개하여 시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임.

2) 제5조(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공원의 보전과 시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제6조(이용시민의 책무)

①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은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강공원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한강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4) 한강 자연생태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과 추진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작성함.

5) 2022 한강공원 백서[부제:시민 곁 가장 가까운 자연, 한강] 본문 p.23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한강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증대,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 이용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4조제3호 중 “설치되어야하며”를 “설치되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과 관련된 시책은 그 집행으로 인한 한강 생태계의 장·단기적 변화를 지속하여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한강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행사 개발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된다”를 “되며, 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의 시책 추진에 따른 한강의 생태환경·기능·생물다양성의 변화 등 시책 집행의 효과와 실적 현황

3. 한강 이용현황 및 프로그램·행사 참여현황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시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 략)</p> <p><u><신 설></u></p> <p>3. 4. (생 략)</p> <p>제4조(기본원칙) 한강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p>	<p>제1조(목적) ----- ----- ----- ---- <u>한강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증대,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이용환경 개선---</u>.</p> <p>제3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u></p> <p>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제4조(기본원칙) ----- -----</p>

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2. (생략)

3. 한강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신설>

4.·5. (생략)

제5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생략)

<신설>

<신설>

1.·2. (현행과 같음)

3. -----

----- 설치되어야 하며

-----.

4.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과 관련된 시책은 그 집행으로 인한 한강 생태계의 장·단기적 변화를 지속하여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5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6호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한강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한강의 생태

제6조(이용시민의 책무) ① (생략)
② 한강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한강공원 백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한강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신 설>

3. (생략)

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행사 개발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되며, 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한강공원 백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시책 추진에 따른 한강의 생태환경·기능·생물다양성의 변화 등 시책 집행의 효과와 실적 현황
3. 한강 이용현황 및 프로그램·행사 참여현황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